

창원시립복지원(노숙인재활시설)

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8. 26.

제 출 자 : 창 원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창원시립복지원(노숙인재활시설)은 신체장애, 정신장애,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·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시설로서,
- 나. 민간위탁 기간이('22. 1. 1. ~ '26. 12. 31.) 만료됨에 따라,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2항(의회 동의 및 보고)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창원시립복지원(노숙인재활시설) 운영 및 관리

나.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노숙인 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- 「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위탁운영)
-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2항(의회 동의 및 보고)

○ 필요성

-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운동을 위해 민간의 전문지식과 인력·지역 자원을 활용함이 효과적임
- 이용 노숙인 등에게 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각종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적응훈련 제공 가능
-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유연하고 민첩한 접근이 필요함

다.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: 창원시립복지원 운영 및 관리 전반

- 노숙인(재활)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: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
- 일시보호시설 기능 수행
- 그 밖에 창원시립복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등

라. 시설 현황

○ 기본현황

시설명	위 치	규 모	종사자 (정원/현원)	입소자 (정원/현원)	現 운영법인	설치일자	비 고
창원시립 복지원	마산합포구 진동면 삼진의거대로 827	1,632.53㎡ 지하1층 지상2층	16/16	60/31	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유지재단 (대표 : 최성은)	1959.4.1.	현위치 건립 2023.3.20.

○ 층별 주요시설

구 분		면 적(㎡)	주 요 시 설
지상	2층	326.72	10인 수면실(남,여)
		65.31	오락실
		15.87	숙직실
		231.47	화장실, 외부휴게공간, 공용공간 등
	소계	639.37	
	1층	72.04	사무실
		54.60	자활작업실
		45.38	조리실
		75.94	식당
		20.68	격리실
		28.34	일시보호실
		8.81	상담실
		363.04	화장실, 외부휴게공간, 공용공간 등
	소계	668.83	
지하	1층	86.02	재활프로그램실
		56.93	기계실
		181.38	창고 등
	소계	324.33	
계		1,632.53	

○ 위치도 및 전경사진



마. 위탁기간 : 5년('27. 1. 1. ~ '31. 12. 31.)

바. 위탁예산 : 1,388,449천원(2026년 기준)

사. 위탁방법 : 민간위탁(공개모집)

아. 선정방법 :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·의결

3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가. 창원시립복지원은 노숙인의 자립 및 사회복귀 증진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용 노숙인 등의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확보

나. 민간 법인의 참여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운영 전문성 강화

4. 운영성과 분야(성과점검) ⇒ “사회복지시설 자체평가 A등급”

○ 평가영역 : 조직운영 등 5개 영역 25개 항목 ※보건복지부 평가지표 참조

총점등급	평가영역					
	계	조직운영	재정 및 인적자원관리	프로그램 및 서비스	생활인의 권리	생활인의 변화
A	92	15	29	23	19	6

※ 등급구분기준 : A등급(90점 이상~100점), B등급(80점 이상~89점 이하), C등급(70점 이상~79점 이하),
D등급(60점 이상~69점 이하), E(59점 이하)

붙임 관련법령 1부. 끝.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

제15조(노숙인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·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6조(위탁 운영) ① 시장은 복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6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하려면 창원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신설 2023. 8. 16.>

1.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

2.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

③ 제2항제2호의 경우 의회의 동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 이 경우,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기간은 의회의 동의(제1항에 따른 동의를 포함한다)를 받은 날부터 6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청소, 경비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2. 연간 위탁비용이 1억원 이하인 사무

⑤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.

1. 민간위탁 사무명

2.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3.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

4.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 개요

5. 민간위탁 기간

6. 민간위탁 예산

7. 수탁기관 선정방식

8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9. 제16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

10.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

⑥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